

슈퍼컴퓨터운영위원회규정

1998.05.08.제정	2006.10.16.일부개정	2007.01.01.일부개정	2007.05.01.일부개정
2009.07.01.일부개정	2011.04.18.일부개정	2012.08.01.일부개정	<u>2014.03.01.일부개정</u>

<정보인프라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자문, 정책의결 등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슈퍼컴퓨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슈퍼컴퓨팅융합응용센터장, 정보인프라팀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1, 2011.4.18, 2012.8.1., 2014.3.28., **2017.3.1.**)

② 위원장은 슈퍼컴퓨팅융합응용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7.1, 2012.8.1, 2014.3.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슈퍼컴퓨터 도입 선정에 관한 사항
2. 슈퍼컴퓨터 관련 정책의결 등에 관한 사항
3. 슈퍼컴퓨터 관련 효율적 활용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개정 2007.1.1.)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개정 2007.1.1.)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슈퍼컴퓨팅융합응용센터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7.1, 2011.4.18, 2012.8.1, 2014.3.28.)

제6조 (삭제 2007.1.1)

제7조 (삭제 2007.1.1)

제8조 (삭제 2007.1.1)

제9조 (삭제 2007.1.1)

부 칙

- ①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기타 특별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2항, 제5조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